

충주시 저소득주민 교복구입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394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2. 5.
제출자 : 충주시장

1. 제안이유

- 저소득노인 보행 보조차 지원으로 보행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의 보행활동을 돋고, 노인들의 일상생활의 편익 및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신체 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보행활동을 돋기 위하여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들에게 보행 보조차 지원(신설)(제2조 2호)
- 나. 보행 보조차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 신설
. (안 제3조, 제4조, 제5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발췌 : 별첨
- 나. 입법예고(2012. 3. 30 ~ 4. 20)결과 의견접수사항 없음

충주시 저소득주민 교복구입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주시 저소득주민 교복구입비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명 “충주시 저소득주민 교복구입비 등 지원 조례”를 “충주시 저소득주민 지원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및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및 「의상사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”를 “충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편의증진 지원에”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저소득주민”이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,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의사상자 가족으로 한다.

2. “노인”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“보행보조차”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돋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「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」 제2조 제3항의 보행보조차를 말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지원대상은 충주시”를 “충주시”로, “자를 말한다”를 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 중 “만 65세 이상 노인”을 “노인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이 조례에 따른 지원내용”을 “제3조 대상에게 지원하는 내용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교복

구입비”를 “교복구매비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비상구급약품 및”을 “비상구급약품과”로 하고, 같은 호 라목 중 “만 65세 이상 노인”을 “노인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보행보조차 지원

가.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으로 하되, 연장자 우선 지원

제5조의 제목 “(지원금액)”을 “(지원기준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교복구매비는 동복·하복 구매비를 지원한다.

제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보행보조기구는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보조차 중에서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. 다만 추가로 지원하여야 경우 5년 주기로 지원할 수 있다.

제5조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“지원시기 및”을 “지원시기,”로 한다.

제6조 중 “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”를 “지원대상자”로 한다.

제7조 중 “조례 시행에 관하여”를 “조례의 시행에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<p><u>충주시 저소득주민 교복구입비 등 지원 조례</u></p>	<p><u>충주시 저소득주민 지원 조례</u></p>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및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및 「의상사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충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편의 증진 지원에 ----- ----- -.</p>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저소득주민”이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「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의사상자가족으로 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“저소득주민”이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,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의사상자 가족, 으로 한다.</p>
	<p>2. “노인”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“보행보조차”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돋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「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</p>

현 명	기 정 외
	<u>시」 제2조제3항의 보행보조 차를 말한다.</u>
제3조(지원대상) <u>지원대상은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</u>	제3조(지원대상) <u>충주시-----</u> ----- ----- ----- <u>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.</u>
1. ~ 5. (생 략) 6. <u>만 65세 이상 노인</u> 만 거주하는 세대 <u><신 설></u>	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<u>노인-----</u> <u>7.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</u>
제4조(지원내용) <u>이 조례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 1. <u>교복구입비</u> 일부지원 가. · 나. (생 략) 2. <u>비상구급약품 및 구급함</u> 지원 가. ~ 다. (생 략) 라. <u>만 65세 이상 노인</u> 만 거주하는 세대 <u><신 설></u>	제4조(지원내용) <u>제3조 대상에게 지원하는 내용-----</u> -----. 1. <u>교복구매비</u> ----- 가. · 나. (현행과 같음) 2. <u>비상구급약품과</u> ----- --- 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 라. <u>노인-----</u> - <u>3. 보행보조차 지원</u> 가. <u>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</u> 으로 하되, 연장자 우선 지원

제5조(지원금액)	제5조(지원기준)
<p><u>① 교복구입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동복, 하복구 입비를 지원한다.</u></p> <p>②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③ 지원시기 및 방법, 그 밖에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</p>	<p><u>① 교복구매비는 동복·하복 구매비를 지원한다.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③ 보행보조기구는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보조차 중에서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. 다만 추가로 지원하여야 경우 5년' 주기로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④ 지원시기, ----- ----- -----.</p>
<p><u>제6조(지원결정)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결정한다.</u></p>	<p><u>제6조(지원결정) 지원대상자----- ----- -----.</u></p>
<p><u>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	<p><u>제7조(시행규칙) -- 조례의 시행에 ----- -----.</u></p>

관 계 법령

□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제15조

제15조(등급판정 등)

- ②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제12조의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(이하 “수급자”라 한다)로 판정한다

□ 복지용구 및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른 복지용구의 급여품목, 품목별 급여대상의 범위, 세부적인 제공기준 및 절차, 전문적인 심의기구의 구성 운영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

제2조 (급여방식 및 급여품목) 복지용구 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기타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(이하 “복지용구 사업소”라 한다)에 의하여 제공된다

- ③ 제1항에 따른 급여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
1. 구입품목
 - 라. 보행보조차

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수급권자”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.
2. “수급자”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.
3. “수급품”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.